

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

## 審 查 報 告 書

행정재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1992년 8월 20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2년 9월 21일

〈제13회 임시회(휴회중)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〉

### 2. 제안설명의요지 (제안설명자: 總務局長 金榮俊)

#### 가. 제안이유

제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중·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-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, 10~15인의 위원, 간사 1인  
(위원장-부구청장, 부위원장-위원중 선출, 간사-기획예산과장)
-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  - 우리구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
  - 지방채 발행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-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심의
- 위원회 개최-정기회의 10일 이내,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개최
- 위원의 임기-2년
- 수당지급-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지급 (공무원 제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金熙中)

- 이 제정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 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의 규정 ('91. 12. 31 신설)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
- 동법 제16조의 2의 제2항 규정을 보면 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위원회는 우리구 중장기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입안시나 집행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위위노히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조례안중 수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 
 첫째, 안 제2조 제1항 제2호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“지역주민(2~3인)중 “관련전문가 (2~3)인”으로 하고 “소속 공무원중”을 “소속직원중에서”로 하며  
 둘째, 안 제4조중 “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”을 “구청장의 중·장기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지방재정계획기이라 한다)이라 하며  
 셋째, 안 제5조 제 2항중 “증기지방재정계획”을 “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하고  
 넷째, 안 제6조 중 “5일전”을 “7일전”으로 하며  
 다섯째, 안 제7조 제목 “계획의 확정·변경사항 보고”를 “계획의 보고”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“구청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며  
 여섯째, 안 제8조 제목 “위원회의 임기”를 위원의 임기”로 하고  
 일곱째, 안 제9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안”으로 하며  
 여덟째, 부칙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별 첨 - 안 검토 대비표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

5.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

※ 별 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# 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한修正案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9월 21일

제출자 : 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잘못된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동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.

## 2. 수정주요골자

가. 안 제2조 제1항 제2호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하고

제2조 제1항 제3호중 “지역주민(2~3)을 “관련전문가(2”3)”으로 한다.

나. 안 제4조중 “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”을

“구청장의 중·장기 지방재정계획(이하“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다. 안 제7조 제목 “계획의 확정·변경사항 보고”를 “계획의 보고”로 하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“구청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한修正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중 제1항 제2호중 “선출”을 “호선”으로 하고

제2조중 제1항 제3호중 “지역주민(2~3)”을 “관련전문가(2~3)”으로 하고

“소속 공무원중”을 “소속 직원중에서”로 한다.

안 제4조중 “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”을 구청장의 중·장기 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안 제5조 제2항 ‘중기지방재정계획’을 “지방재정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중 “5일전”을 “7일전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제목 “계획의 확정·변경사항 보고”를 “계획의 보고”로 하고

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“구청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8조 제목 “위원회의 임기”를 “위원의 임기”로 한다.

안 제9조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안”으로 한다.

부칙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한다.

## 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한修正案對比表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 (목적) (생략)	제1조 (목적) (원안과 같음)
제2조 (위원회의 구성)	제2조 (위원회의 구성)
① (생략) 1. (생략) 2. 부위원장-위원회에서 <u>선출</u> 3. 위원-지역주민(2~3인) <u>구의원(4~5인),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</u> <u>국장급(5인)</u>	①(원안과 같음) 1. (원안과 같음) 2. .... <u>호선</u> 3. .... <u>관련전문가(2~인)</u> ..... <u>소속 직원중에서 ...</u> .....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	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..... 구청장의 <u>증장기지방재정계획(이하“지방재정 계획이라 한다)</u> .....
제5조 (위원회의 개최)	제5조 (위원회의 개최)
①(생략) ②정기회의는 매년 <u>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</u> 10일이내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한다.	①(원안과 같음) ②..... <u>지방재정계획</u> ..... ..... .....
제6조 (안건의 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	제6조 (안건의 배부) ..... ..... <u>7일전까지</u> ..... .....
제7조 (계획의 확정, 변경사항 보고)	제7조 (계획의 보고)
①위원장은 <u>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확정결과를</u> <u>매년 5월중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	<u>구청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</u> <u>보고하여야 한다.</u>

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3월 12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재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위원회구성-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, 10~15인의 위원, 간사 1인  
(위원장-부구청장, 부위원장-위원중 선출, 간사-기획예산과장)
-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  - 우리구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
  - 지방채발행등,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-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심의
- 위원회 개최-정기회의 10일 이내,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
- 위원의 임기-2년
- 수당 지급-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(공무원 제외)

## 3. 제정근거

지방재정법 제16조의 2

## 4. 조례(안) 별첨 (전문 10조, 부칙 1조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

호

#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

제 1 조(목적)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(10~15인)을 둔다.
  1. 위 원 장-부구청장
  2. 부위원장-위원회에서 선출
  3. 위 원-지역주민(2~3인), 구의원(4~5인), 영등포구소속공무원중 국장급(5인)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예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보한다.
- ③ 위원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거 선임한다.

### 제 3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 5 조(위원회의 개최)

-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10일이내로 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6 조(안건의 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7 조(계획의 확정, 변경사항 보고)

- ①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확정 결과를 매년 5월중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기타 주요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보고에 가름한다.

제 8 조(위원회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제 9 조(위원의 수당지급) 위원회 개최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(기타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